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신설 >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2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내대리인 제도 개관	2
2.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신설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6.

다. 회 부 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내대리인 제도 개관

가. 도입배경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됨.

구체적으로 국내 실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이나 자료제출명령의 송달이 곤란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 책임을 부과하고, 감독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마련됨.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선행(2019. 3.) 도입된 국내대리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 영역으로 확장(2020. 6.)한 것임.

나. 타 법의 국내대리인제도 규정 현황

현행 기준 타 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국내대리인제도를 명시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¹⁾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²⁾에서도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법률상 국내대리인제도의 비교>

구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도입 목적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정보보호 강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행사 실효성 확보	○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및 규제 집행 실효성 확보
적용 대상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 정보처리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정 의무	○ 있음	○ 있음	○ 있음
지정 방식	○ 서면 지정	○ 서면 지정	○ 서면 지정
역할	○ 정보보호 관련 업무, 자료 제출, 이용자 민원 대응 등	○ 개인정보 관련 권리 행사 대응, 자료 제출 등	○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 이행 대리
정보 공개 의무	○ 있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공개)	○ 있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공개)	○ 없음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신설

가. 주요내용

-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 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 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③·④ (생략)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 및 트래픽양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³⁾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① 이용자 보호 업무, ② 자료 제출, ③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④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의 업무를 대리하여야 함.

- 이에 따르면, 대규모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해당 사업자를 대신하여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제출명령을 대리·이행함으로써 국내에서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준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경우 타 법률의 입법례와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공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분, 자료제출 명령의 송달 등의 절차 이행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3항⁴⁾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4항⁵⁾은 국내대리인의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②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해당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와 감독기관이 국내대리인을 용이하게 확인·접촉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행정처분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국내대리인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이 확보되어 법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두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에 상응하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9호의2⁶⁾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여,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두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 사례와 같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의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내 대리인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국내 대리

6)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인의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 및 법적 책임이 강화되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해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국내대리인은 이용자 보호 및 규제 이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나 정보 공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동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공개를 통해 이용자 보호 실효성 제고, 법 집행 책임 주체 명확화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나,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부분의 보완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